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해 양 수 산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항만안전보안 강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진해신항 개발·육성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대비 방사능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연구사 2명),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와 적합성 심사 및 국가해양관측망 확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천공항 수산물 전용 검색대 도입에 따라 필요한 인력 10명(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의 정원 17명(5급 1명, 6급 5명, 7급 5명, 8급 4명, 9급 2명)을 감축하는 한편,

수산물 안전 관련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수산물안전과를 폐지하고, 수산물안전과에서 수행하던 수산물 안전성 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며, 이와 관련된 인력 9명(4급 1명, 4·5급 1명, 5

급 4명, 6급 3명)을 본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또한,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정원 인력 중 해양수산 분야 자유무역협정 협상 대응 인력 1명(5급 1명) 및 가거도항 복구공사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의 제12호·제13호·제59호부터 제6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2.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 13. 소금산업 및 염업조합의 관리·육성
- 59. 외국과의 수산물 위생관리 협력
- 60. 해역의 위생관리에 관한 업무
- 61.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업무
- 62. 수산생물 방역·검역 제도의 운영

제16조제1호의 “수산물 검역·방역 제도의 운영·실시”를 “수산물 검역·방역, 수출수산물 검사 및 관련 국제협력”으로 한다.

제16조제1의2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의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제4항의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둔다.

별표 2의 총계 “589”를 “598”로 하고, 일반직 계 “585”를 “59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68”을 “577”로 한다.

별표 2의2를 신설하고 별지 1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총계 “2,930”을 “2,917”로 하고, 일반직 계 “2,819”를 “2,80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796”을 “2,783”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삭제한다.

별표 3의3을 신설하고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53조의3제1항 관련)

조직	정원
국립해양조사원 1개 센터	15명

별표 5의 “1. 제55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를 “1. 제55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5의 “3. 제55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를 “3. 제55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5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55조제1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10
일반직 계	10
5급 이하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3항제12호·제13호·제59호·제60호·제62호까지, 제16조제1호·제1의2호·제6호·제8호·제9호, 별표 2·별표 3·별표4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부 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6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제3조(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6일까지는 별표 3의3을 적용한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의 정원 17명(5급 1명, 6급 5명, 7급 5명, 8급 4명, 9급 2명)

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의2]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관련)

총계	589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2
고위공무원단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
일반직 계	585
고위공무원단	15
3급 또는 4급 이하	568
전문직공무원	2

[별표 3의3]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제52조제1항 관련)

총계	2,926
교육공무원 계	111
교장	2
교감	2
교사	107
일반직 계	2,815
고위공무원단	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9
3급 또는 4급 이하	2,792
전문직공무원	6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② (생략)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2. (생략) 3. <u>해양수산 부문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u> 4.~30. (생략) ④ (생략) 제11조(수산정책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1. (생략) 12. <u>삭제</u> 13. <u>삭제</u> 13의2.~58. (생략) 59. <u>삭제</u> 60. <u>삭제</u> 61. <u>삭제</u>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u><삭제></u> 4.~30.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수산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11. (현행과 같음) 12. <u>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u> 13. <u>소금산업 및 염업조합의 관리·육성</u> 13의2.~58. (현행과 같음) 59. <u>외국과의 수산물 위생관리 협력</u> 60. <u>해역의 위생관리에 관한 업무</u> 61. <u>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업무</u>

현행	개정안
<u>62. 삭제</u> 63.~81. (생략) ④~⑥ (생략) 제16조(직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u>1. 수산물 검역·방역 제도의 운영·실시</u> <u>1의2. 수출수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u> 2.~5. (생략) <u>6. 소금산업 및 염업조합의 관리·육성</u> 7. (생략) <u>8. 수산물의 검역·방역·위생 관리와 수출수산물의 검사 등에 관한 국제협력</u> <u>9. 해역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u> <u>10.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사항</u> 제55조(한시정원) ①해양수산 분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u>62. 수산생물 방역·검역 제도의 운영</u> 63.~81. (현행과 같음) ④~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직무) ----- ----- -----. <u>1. 수산물 검역·방역, 수출수산물 검사 및 관련 국제협력</u> <u>1의2. <삭제></u> 2.~5. (현행과 같음) <u>6. <삭제></u> 7. (현행과 같음) <u>8. <삭제></u> <u>9. <삭제></u> <u>10. <삭제></u> 제55조(한시정원) ①----- -----

현행	개정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②~③ (생략) ④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둔다. ⑤~⑪ (생략) <신설>	----- ----- -----<u>2024년 12월 31일까지</u>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2024년 12월 31일까지</u>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둔다. ⑤~⑪ (현행과 같음) ⑫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4년 12월 31일까지</u>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2]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u>589</u>	<u>598</u>	+9
·	·	·	
·	·	·	
·	·	·	
·	·	·	
·	·	·	
·	·	·	
일반직 계	<u>585</u>	<u>594</u>	+9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68</u>	<u>577</u>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3]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930</u>	<u>2,917</u>	△13
·	·	·	
·	·	·	
·	·	·	
·	·	·	
일반직 계	<u>2,819</u>	<u>2,806</u>	△1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796</u>	<u>2,783</u>	△13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4